

예 산 총 칙

제1조 :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397,045,254	11,911,358
1. 일반회계	386,636,164	11,599,085
2. 특별회계	10,409,090	312,273
의료보호기금	914,307	27,429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2,091,243	62,737
주 차 장	5,861,999	175,860
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	268,028	8,041
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	708,865	21,266
지 하 수 관 리	564,648	16,939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4조 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,000,000천원이다.

제6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1,171,328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